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04

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: 박상혁 · 이해식 · 한준호

홍기원 · 박희승 · 조 국

민병덕 • 채현일 • 김한규

이기헌 · 정준호 · 이인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, 안전점검 결과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 고 있는 현행 절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,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제33조제2항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어 긴급 대피 등을 위하여 신속히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안전점검) ① (생 략)	제33조(안전점검) ① (현행과 같
	<u>♦</u>
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	2
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	
조·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	
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	
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	
입주자대표회의(임대주택은 임	
대사업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	
에서 같다)에 그 사실을 통보	
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
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	
그 사실을 보고하고, 해당 건축	
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	
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
<u><단서 신설></u>	다만,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
	고의 발생 우려가 있어 긴급
	대피 등을 위하여 신속히 이용
	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
	경우에는 조치를 한 후 지체
	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
	<u>다.</u>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